주시경교양대학 운영규정

[제정 2017.11.8., 일부개정 2021.1.13.]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배재대학교 직제규정 제19조 3항에 따라 주시경교양 대학(이하 '교양대학'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배재대학교의 교양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. 〈개정 2021.1.13.〉
- 제2조(교양교육 목표) 교양대학은 5대 핵심역량(인성, 감성, 지성, 소통, 수행)을 골고루 갖춘 "나섬인성 기반의 도전하는 균형교양인재"를 양성하기 위해 교양교육과정과 교과연계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[본조신설 2021.1.13.]

[기존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<2021.1.13.>]

- 제3조(조직) ① 교양대학에 기초교육부, 교양교육부, 글로벌교육부, 미래역량교육부, 융복합교육센터, 나섬인성교육센터 및 교학팀을 둔다. <개정 2019.3.1., 2021.1.13.>
 - ② 교양대학에 학장과 부학장을 두며, 총장이 임면한다.<개정 2021.1.13.>
 - ③ 삭제 <2021.1.13.>
 - ④ 교양대학의 기초교육부, 교양교육부, 글로벌교육부, 미래역량교육부에 부장, 융복합교육센터, 나섬인성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 <개정 2019.3.1., 2021.1.13.>
- ⑤ 삭제 <2021.1.13.>

제2장 조직 및 업무분장

- 제4조(업무) 교양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양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

- 2.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, 편성, 개설, 개편, 운영 및 관리
- 3.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평가 및 환류
- 4. 교양교육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평가와 관리
- 5. 교양교육 시설(강의실, 실습실 등) 운영 및 관리
- 6. 교과연계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, 운영 및 관리
- 7. 삭제 <2021.1.13.>
- 8. 기타 교양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[전문개정 2021.1.13.]

[제2조에서 이동, 기존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<2021.1.13.>]

제5조(업무분장) ① 교양대학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교양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
- 2. 교양교육과정의 편성,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업무
- 3. 교양교과목 개설 및 분반, 폐반(합반)에 관한 업무
- 4. 교양교과목 강의시간표 작성에 관한 업무
- 5. 교양교과목 수강신청, 수업 진행 및 각종 시험에 관한 업무
- 6. 교양교육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
- 7. 교양교육 시설(강의실, 실습실 등)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
- 8. 학장 직인 관리에 관한 업무
- 9. 기타 교양대학에 관련된 업무
- ② 기초교육부는 글쓰기 교육, 글로벌의사소통 교육, AI·SW 교육 등을 위한 교과목 개발,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.
- ③ 교양교육부는 역사, 철학, 사회, 문화, 예술 등의 교양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,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.
- ④ 글로벌교육부는 유학생 전용 교양교과목 및 국제지역학 등의 교과목 개발,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.

- ⑤ 미래역량교육부는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목 개발,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.
- ⑥ 융복합교육센터는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을 담당한다. 〈개정 2019.3.1.〉
- ⑦ 나섬인성교육센터는 교과연계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,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.

[전문개정 2021.1.13.]

[제4조에서 이동 <2021. 1. 13.>]

제3장 위워회

제6조 (설치) 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시경교양대학 교육과정위원회, 융복합전공위원회를 둔다.

[본조신설 2021.1.13.]

- 제7조 (구성) ① 주시경교양대학 교육과정위원회는 주시경교양대학장, 주시경 교양대학 부학장, 각 단과대학 부학장, 교무처 학사지원팀장, 주시경교양대학 교학팀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주시경교양대학장으로 한다.
 - ② 융복합전공위원회는 주시경교양대학장, 주시경교양대학 부학장, 각 단과 대학 부학장, 교무처 학사지원팀장, 주시경교양대학 교학팀장을 포함한 9인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주시경교양대학장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1.1.13.]

제8조 (임기) 주시경교양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및 융복합전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1.1.13.]

- 제9조 (기능) ① 주시경교양대학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개편 및 학사 운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 - 1.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
 - 2. 교양교과목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3.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사항
 - 4. 교과연계 및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교양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
 - ② 융복합전공위원회는 교육과정 개편 및 학사 운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 - 1. 연계·융합전공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
 - 2. 연계・융합전공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연계ㆍ융합전공 운영 등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21.1.13.]

제10조 (회의) 각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[본조신설 2021.1.13.]

제4장 기타

제11조(기타)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시경교양대학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